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(‘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’, ’24.12.20 공포)된 산림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제때마련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‘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’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(안 제32조의7)

- 1)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개정(’24.12.20 공포, ’25.12.21 시행)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례로 위임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 삭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7제1항 중 “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(이하 “각 위원회””를 “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”으로, “각각 호선(互選)하고”를 “호선(互選)하고”로, “각각 지명한다”를 “지명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”를 “제2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각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”을 “지방산림청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”를 “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7항) 전단 중 “각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“각 위원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”를 ““위원회””로 한다.

이 영은 '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7(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의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45조 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 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(이하 “각 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2조의7(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 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</u> <u>회(이하 “위원회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 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다.	<삭 제>
1.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	
2.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 는 사람	
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	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-- -----

각각 호선(互選)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.

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.

⑦ 각 위원회의 운영, 위원의 제척·회피·해임·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심의위원회”는 “각 위원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본다.

호선(互選)하고-----
----- 지명한다.

④ 제2항제2호-----

-----.

⑤ 위원회-----
----- 지방산림청 -----

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.

⑥ 위원회-----

-----.
----- “위원
회”-----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사태방지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33